

(시·군·구공무원용)

2회이상 위반기록란		교통법칙행위 적발고지서			
회 경찰서(제주특별자치도) No.		No. (연도)			
아래와 같이 전용차로통행,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및 주정차 위반으로 경찰서장(제주특별자치도지사)에게 출석할 것을 고지하오니 정해진 일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출두	기 일	년 월 일 시 분까지			
	장 소	경찰서(민원봉사실)[자치경찰대]			
위반 행위 요지	위반일시	년 월 일 시 분경		보관	☐ 운전면허증 ☐ 국제운전면허증 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검인 ☐ 기타
	위반장소				
	적용법조	☐ 「도로교통법」 제15조 (전용차로통행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29조 (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(주정차금지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3조 (주차금지장소위반) ☐ 「도로교통법」 제34조 (주정차방법위반)			
위반자	성 명			생년월일	
	주 소				
	차 량	☐관 ☐영 ☐건설기계 시 ☐자 ☐외 ☐노면전차 도		제 호	차종
	운전면허	☐대형 ☐보통 ☐소형 제 종 ☐건설기계 ☐특수 ☐원자 ☐국제 ☐노면전차		면허 번호	
	날 인	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인정합니다. (서명 또는 인)			
년 월 일					
단속공무원 (인)					
위반사항	※ 위반내용(상세히)				